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장기성장3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변경 사유 : 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②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

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3. 4. 20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기재 정정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<u>경과하였음에도</u>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요약정보
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2. 28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투자자 유의사항	기재 정정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		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 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2년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 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-	--	--	---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3년 경과내역 삭제	[채권] <u>책임운용역 문성호</u> (2014.8.29~2020.1.8) <u>부책임운용역 진재식</u> (2017.7.27~2020.1.8)	<u>〈삭 제〉</u> <u>〈삭 제〉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. 투자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 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 [채권] 〈신 설〉	(1)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 [채권] <u>증권대차거래 목적 등 주식 기재</u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 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 리	듀레이션 폭 확대	1) 투자전략 ☐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 투자신탁 [채권]의 투자전략 (1) 듀레이션 전략 기본적으로 1~1.5년 수준을 유지하되, 금리전망에 근거 하여 단계적, 점증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상황에	1) 투자전략 ☐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 투자신탁 [채권]의 투자전략 (1) 듀레이션 전략 기본적으로 1~2년 수준을 유지하되, 금리전망에 근거 하여 단계적, 점증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상황에



		따라 듀레이션 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.	따라 듀레이션 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2. 28.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[연금저축계좌 과제 주요 사항] <u>* 공제제도</u> <u>: 첨부 참조</u> * 분리과세한도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<u><추 가></u> *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<u><추 가></u>	[연금저축계좌 과제 주요 사항] <u>* 공제제도</u> <u>: 첨부 참조</u> * 분리과세한도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<u>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23.1.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</u> *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<u>: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</u>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 가. 요약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<신 설> <신 설>	<u>증권대여 및 증권차입에 따른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</u> <u>주식 기재</u> <u>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, 주식의 매매회전을 기재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제 24 기(2021.12.31) 제 23 기(2020.12.31)	제 25 기(2022.12.31) 제 24 기(2021.12.31)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3. 3. 31. 기준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(2) 수시공시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

[첨부]

[변경 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대상	50세 이상 세액공제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대상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	600만원 (900만원)	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		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	300만원 (700만원)			12%

※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[변경 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 (900만원)	15%
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	12%

※지방소득세 별도

〈삭 제〉

〈신 설〉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

트러스톤자산운용